

#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의 의의 및 실무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박 석 재\*\*

- 
- I. 서론
  - II. ISBP의 의의 및 제정배경
  - III. ISBP의 실무 적용상의 문제점 검토
  - IV. 결론
- 

## I. 서론

신용장통일규칙(UCP)은 최근 10년 주기로 개정을 하여 왔다. 따라서 1993년 UCP의 5차 개정이 있었으므로 당연히 2003년에는 UCP의 6차 개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런데 국제상업회의소(ICC)는 UCP 600 대신에 “화환신용장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 ISBP)<sup>27)</sup>이라는 간행물을 발간하였다.

동 간행물이 발간된 배경은 신용장의 서류심사기준으로 오랜 동안 존중되어 온 엄격일치원칙의 적용에 대한 현실적인 불합리성에서 출발하였다. 즉, 수익자가 신용장 하에서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게 신용장의 제조건과 엄격

---

\* ‘이 논문은 우석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됨’

\*\*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 부교수, 경제학박사.

27) ISBP는 UCP 500 제20조~제47조에 규정된 심사대상서류에 관하여 총 11장 200개 항목의 세부적인 서류심사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예비적 고려(1~5항), 일반원칙(6~44항), 환어음과 만기일 계산(45~58항), 송장(59~72항), 해양/해상선화증권(73~99항), 용선계약부 선화증권(100~119항), 복합운송서류(120~143항), 항공운송서류(144~169항), 도로/철도/내수로운송서류(170~182항), 보험서류(183~195항), 원산지증명서(196~200항).

하게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엄격일치의 원칙은 이론상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서류의 一語一句의 엄격한 일치가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나온 것이 사소한 불일치는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상당일치의 원칙이었다.

UCP 500 제정 당시 서류심사의 기준으로서 양 원칙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타협안으로 나온 것이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이라는 개념이다. 즉, UCP 500 제13조 (a)항 두 번째 문장은 “문면상 신용장의 제조건과 규정된 서류의 일치성 여부는 본 규칙에 반영된 국제표준은행관행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UCP 500에서 서류심사의 기준으로서 새롭게 도입된 개념인 국제표준은행관행은 애매한 점이 많았다. 과연 무엇이 국제표준은행관행인지를 둘러싸고 수많은 논쟁이 벌어졌으며 ICC 은행위원회에 600개 이상의 많은 질의가 쇄도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ICC 은행위원회는 2000년 5월 국제표준은행관행의 구체적 문서화를 목표로 작업에 착수하여 2년 6개월에 걸친 수많은 회의와 논의를 거쳐 탄생한 것이 ISBP이다. 동 간행물은 2002년 10월 로마 회의에서 ICC 은행위원회의 압도적인 승인<sup>28)</sup>을 받고 2003년 1월 1일부터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작년 중순부터 ISBP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주로 ISBP의 조문내용 설명에 치우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ISBP의 조문내용에 대한 설명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ISBP의 의의, 유용성, 문제점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ISBP의 유용성을 널리 홍보함과 동시에 ISBP의 운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실무상 올바른 대응에 일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ISBP를 제정한 국제상업회의소의 공식 잡지인 DCINSIGHT 및 제정작업에 참여한 학자들의 최신 논문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방법을 취한다.

28) 찬성 57 대 반대 8(32개 위원회는 찬성, 3개 위원회는 반대)의 투표 결과로 ISBP는 승인되었다(D.R.Smith, “Standard banking practice’ and the UCP”, DCINSIGHT, Vol.8, No.4, 2002, 10/12, p.1).

## II. ISBP의 의의 및 제정배경

### 1. 의의 및 유용성

#### (1) 의의

UCP 500 제13조 a항 두 번째 문장에 따르면 “문면상 신용장의 제조조건과 규정된 서류의 일치성 여부는 본 규칙에 반영된 국제표준은행관행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국제표준은행관행”이란 “국제적”이므로 당연히 일 국만의 은행실무관행은 포함되지 않으며 상대국만의 관행도 제외되는 국제적인 것을 의미하며, 선박회사나 보험회사가 행하는 심사가 아니라 “은행”이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실무도 전문적 지식을 가지는 전문가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적인 은행원이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법리론과 어떤 적절한 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sup>29)</sup>

관습 및 관행을 조문화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일부 사람들은 매우 상세한 표준이 기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흔히 ‘합리적인 서류 심사인’의 관행으로 언급되는 보다 일반적으로 기술된 표준의 ‘뼈대’(framework) 접근을 선호한다고 주장하였다. 양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국제표준은행관행’이란 문구는 UCP 400에서 UCP 500으로의 개정과정 동안 이러한 두 접근 사이의 타협안인 것처럼 여겨진다.<sup>30)</sup>

또한 Kozolchyk 교수는 UCP 500 제13조 (a)항 규정은 타협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즉, UCP 500 입안과정에서 일부 참여자들은 서류의 일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일치’의 채택을 주장하였다. 다른 참여자들은 ‘엄격일치’를 주장하였다. 아무튼 ‘본 규칙에 반영된 국제 표준은행관행’은 양 진영을 만족시켰다는

29) 經濟法令研究會 編, 『信用狀統一規則の解説とQ&A』, 經濟法令研究會, 1993. 12, p.64.

30) D.R. Smith, “Donald Smith explains the ICC project on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s”,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6, No.3, Summer 2000, p.3.

것이다.<sup>31)</sup> 이와 같이 ISBP라는 개념은 서류심사의 엄격일치와 상당일치를 절충한 타협의 산물로 등장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는 엄격일치와 상당일치 원칙이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현실적인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국제표준은행관행과 관련하여 Längerich 씨의 질문인 “은행가들은 정말로 그들이 중국, 브라질 또는 독일에서 근무하건 간에 동일한 방식으로 서류들을 조사하는가”에 대하여 Kozolchyk 교수는 “여러 나라의 은행가들은 상당히 동일한 방식으로 서류들을 조사한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면서 특히 UCP 1962년 개정판 이후 사실상 국제은행업관행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통일성이 달성되어 왔다.”라고 언급하였다.<sup>32)</sup>

일부 국제상업회의소 국내위원회 위원들은 국제표준은행관행이 정착하기 쉬운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이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 측 반응은 많은 관행이 이미 UCP 500 내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물품의 명세가 “문면상” 일치를 위해 어떻게 심사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를 알아보자. UCP 500 제 37조 (c)항은 송장상의 명세와 기타 서류상의 명세를 구분하고 있다. 상업송장상의 물품의 명세는 신용장상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하지만, 반면에 다른 서류에 있어서 물품은 신용장상의 명세와 모순되지 않는 일반용어로서 기술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33)</sup> 또한 은행의 심사는 문면상 신용장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가의 여부에 그치며 전문적, 실질적인 심사는 하지 않으며(제13조 a항), 심사는 서류만에 기초하여 행해지며(제13조 b항), 위조서류를 발견할 수 없었던 때에 은행은 면책된다(제15조)는 등의 규정이다. 또한 신용장거래는 매매계약으로부터 독립한 거래라는 것(제3조), 신용장거래는 매매 등의 거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취급하는 거래(제4조)라는 독립·추상성의 성질을 지적할 수 있다.<sup>34)</sup>

그렇지만 이러한 설명 및 예로는 무역현장에서 발행자, 서류 심사자 또는 사

31) P. Turner, “Standard banking practice’ and the UCP”, DCINSIGHT, Vol.8, No.4, 2002. 10/12, p.13.

32) B. Kozolchyk,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The UCP is creating it, says Boris Kozolchyk”,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3, No.3, Summer 1997, p.16.

33) Charles del Busto, Documentary Credits UCP 500 & 400 Compared, ICC, 1993, pp.39~40.

34) 經濟法令研究會 編, 전계서, p.64.

용자로서 역할을 하는 신용장 실무가들로 하여금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대한 애매함을 해결해주지 못했다.<sup>35)</sup> 따라서 동 관행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ISBP의 제정이 추진된 것이다.

요컨대 ISBP는 UCP의 효력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UCP를 일상에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ISBP는 UCP의 부칙이나 해석서 또는 개정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이 아니라 UCP 500 제13조 a항에 규정된 국제표준은행관행을 조문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sup>36)</sup>

## (2) 유용성

ISBP는 2003년 1월 1일부터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는 그 사용기간이 1년 남짓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ISBP의 유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자료를 찾기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국내외 신용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ISBP는 국제무역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ISBP의 유용성에 대해 외국의 은행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먼저 ICC 은행위원회 회원인 영국인 Martin Shaw 씨는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 ISBP에 대한 반응은 우호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매우 많은 불일치를 나열하면서 UCP 500 제14조 (d)항 하에서 거절 통지서를 수령하였는데, 이러한 불일치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종종 ‘가짜의’(spurious), ‘사소한’(frivolous), ‘조작된’(manufactured) 것으로 판명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ISBP는 이러한 유형의 이른 바 불일치를 실제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래의 법원 사건들은 ISBP를 중요한 진술 및 L/C 거래에 있어서 최상의 관행의 기준으로서 이용할 것이다. 따라서 ISBP는 단순한 ‘지침’ 또는 ‘교육적 목적’을 위한 코멘트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ISBP 내용은 UCP 조항 그 자체는 아니지만, UCP 조항들 및 ICC 의견서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장래에 ISBP를 무시하거나 ISBP의 내용에 명확히 역행하는 은행은 용감한 또는 무모한 은행일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ISBP의 사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sup>37)</sup>

35) M. Shaw, “Three bankers judge the document on standard banking practices”, DCINSIGHT, Vol.9, No.1, 2003. 1/3, p.13.

36) 서정두, “ISBP(신용장 국제표준은행관습)의 주요내용과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20권, 2003. 8, p.318.

또한 덴마크 Nordea 은행의 Reinhard Längerich 씨는 “ISBP는 서류의 준비 및 심사와 관련되는 일련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ISBP가 화환신용장 거래와 관련된 당사자들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수익자와 개설의뢰인은 무역거래를 시작하여 화환신용장에 대한 조건을 약정할 때에 ISBP를 사용하도록 조언을 받는다. 그리고 수익자는 요구되는 서류들을 준비할 때에 ISBP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ISBP는 과거에 서류들을 수리하는 중에 발생하였던 많은 분쟁들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ISBP는 무역거래에 참여하는 신용장 거래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법률가들을 위한 지침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sup>38)</sup>라고 ISBP의 유용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은행연합회 회원인 Sho Chee Seng 씨는 “상당히 많은 법정 소송사건에서 판사들은 증인으로서 신용장 전문가들에게 그들의 의견을 말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분쟁이 있는 때에는 법정이 ISBP를 참조할 것으로 나는 믿는다.”<sup>39)</sup>라고 하면서 ISBP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ISBP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도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먼저 강원진 교수는 “이제까지 신용장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이나 지급이행과 관련하여 UCP 500 내에서 해석기준이 없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문제들로 인하여 ICC 은행위원회에 문의하는 번거로움이 많았던 점을 앞으로는 ISBP에 따라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ISBP가 UCP 500에서 규정된 각 조항에서 해석하거나 반영될 수 없는 실제적인 국제표준은행관행을 제공하게 될 때 국제결제의 중심 축으로서 신용장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의 제거와 비용감소 등을 통하여 결제상의 분쟁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sup>40)</sup>라고 하면서 ISBP의 유용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정두 교수도 “ISBP는 국가가 이를 채택하여 적용되는 강행법규가 아니고, 신용장에서 준거조항을 두어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ISBP는 신용장거래의 국제표준은행관행으로서 이를 업무에 적용하면 서류 심사자들은 각자의 관습을 전세계 다른 심사자들의 관습과 일치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처음 서

37) M. Shaw, op. cit., p.13.

38) R. Längerich, “Three bankers judge the document on standard banking practices”, DCINSIGHT, Vol.9, No.1, 2003. 1/3, p.15.

39) S.C. Seng, “Implications and impact of ISBP”, DCINSIGHT, Vol.9, No.2, 2003. 4/6, p.11.

40) 강원진, “신용장서류심사를 위한 ICC 국제표준은행관행의 일반원칙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18권 제3호, 2003. 9, pp.164~165.

류를 제시할 때부터 불일치로 인한 UNPAID의 건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sup>41)</sup>라며 ISBP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다.<sup>42)</sup>

요컨대 국내외 학자, 은행가들의 견해와 구미에서의 자료를 참조할 때 ISBP는 많은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며 필자도 대체로 위의 의견들에 동의하는 바이다. ISBP는 서류심사를 위한 대조표(chekhlist)로서 역할을 하여 서류의 불일치로 인한 UNPAID를 대폭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신용장거래의 원활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익자와 개설의뢰인이 서류 작성 시 ISBP를 참조함으로써 사전에 분쟁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며 ISBP는 은행, 수익자, 개설의뢰인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ISBP가 UCP 500을 기준으로 작성된 점에 비추어 향후 2, 3년 후에 UCP 600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ISBP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 2. 제정배경

### (1) 국가간 상이한 신용장 관행의 통일 필요성

신용장 거래에서 우리는 종종 다양한 국가들 내에 존재하는 신용장 관행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일국 또는 한 지역내의 은행들은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지역의 은행과 다른 관점에서 UCP를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지역적으로 독특하거나 국가적으로 독특한(심지어 도시간에도 독특한) 관행에 있어서 지리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은행 관행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는 은행들이 UCP를 읽고서 그것을 다르게 이해하고, 또한 동일한 지역 내에 있는 은행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은행들과는 당사자로부터의 압력 및 관행의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환거래 관계의 단절을 이끌 수 있다.<sup>43)</sup> 이에 대해 국제무역금융계의 전문가인 Shaw 씨는 “다음과 같은 외관상의/주장된 불일치 즉, 개인적 의견, 실무자들 사이의 다른 경험, 다른 태도, 주관적인 접근, 해석의 문제, 그것이 실제의 문제이다.”<sup>44)</sup>라고 언급함으로써 관행

41) 서정두, 전제논문, p.319.

42) 이에 관해서는 박세운 교수도 같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박세운, “신용장 관련 국제표준은행관행 해설”, 『중재』 제308호, 2003 여름, p.36 참조).

43) D. Smith, supra note 4, p.3.

44) M. Shaw, “Martin Shaw claims there are better ways to reduce discrepancies

의 상이에 대해 분명히 지적하였다.

다음의 두 가지 예는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해준다. UCP 500 제21조는 서류 상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발행자 또는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만일 신용장이 발행자 또는 내용에 관한 규정이 없이 포장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은행은 포장명세서의 자료 내용이 제시된 그 밖의 모든 서류와 불일치하지 않을 때 그러한 서류들을 제시된 대로 수리한다. 그러나 비록 신용장에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포장명세서는 서명 및 일자가 기입되어야만 한다고 믿는 국가들이 있다. 이와 같이 포장명세서의 서명 문제에 관하여 각 나라 간에 상이한 관행이 존재한다.<sup>45)</sup>

다음으로 도로화물 운송장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자.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트럭 선화증권 3통이 일반적으로 송화인에 의하여 작성되며 최초의 사본은 송화인, 운송인 및 수화인에 의하여 소유된다.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트럭 선화증권은 화물수령증에 지나지 않는다. 즉, 그것은 권리증권이 아니다. 대조적으로 멕시코의 트럭 선화증권은 송화인이 아니라 운송인에 의하여 작성된다. 그 증권은 트럭 운송업자-운송인이 수화인에 의하여 운임의 지급을 받기까지는 보통 트럭 운송업자-운송인에 의하여 한 통의 원본 형식으로 보유된다. 그리고 캐나다 및 미국의 법률, 관행과 대조적으로 멕시코의 관행은 트럭 선화증권을 권리증권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멕시코의 트럭 선화증권에 송화인의 서명 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캐나다·미국의 관행과 일치하지 않으며 널리 퍼진 관행을 무시하는 것이다.<sup>46)</sup>

이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국제적으로 상이한 신용장 관행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관행의 차이는 무역거래의 원활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표준은행관행을 제정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 (2) 신용장 분쟁의 최소화 필요성

지금까지의 UCP 중 가장 상세하고 포괄적이라는 호평을 받는 UCP 500은 1994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그 때 ICC 은행위원회의 의도는 운송업의 새로

and that ICC should take advantage of them”,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5, No.2, Spring 1999, p.11.

45) D. Smith, *supra* note 4, p.3.

46) B. Kozolchyk, *op. cit.*, p.17.



운 발전에 대한 언급과 서류의 불일치를 전 세계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UCP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모든 국가들 및 지역에서 서류의 심사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UCP 500은 제13조 (a)항에서 서류의 일치는 UCP의 조항들에 반영된 ‘국제표준은행관행’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불일치의 건수는 감소되지 않았음이 판명되었고, 당사자들 간의 분쟁 건수가 종종 ‘사소한’ 불일치, UCP의 해석 및 ‘지역적인 관행’으로 변질된 ‘표준은행관행’으로 인하여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신용장 관계당사자들을 훨씬 더 당혹케 하는 일이었다.<sup>47)</sup>

그런데 1996년에 멕시코 은행협회와 협력하여 미국의 국제금융서비스협회(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Association, Inc. : IFSA)가 “신용장 서류의 심사를 위한 표준은행관행”(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Letter of Credit Documents : SBPED)을 간행하였는데, 본서는 북미 국가들 사이에 은행간 분쟁 건수를 크게 감소시켰다.<sup>48)</sup> 이 간행물에 고무되어 ICC 은행위원회는 IFSA 간행물과 유사한 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작업부를 조직하였다. IFSA 간행물의 목표는 신용장에 의거하여 제시된 서류를 은행가가 심사할 때 어떻게 심사하여야 하는가를 문서로 작성함으로써 멕시코와 미국간 신용장 거래를 촉진하기 위함이었다. 그것이 출판된 이후 거절 및 소송이 상당히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그 간행물은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sup>49)</sup>

현재 UCP를 적용함으로써 은행이 발견한 불일치서류 비율 중 최초의 서류 제시 시 수리 거절되는 서류의 비율이 70%를 점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다.<sup>50)</sup> 이러한 거절은 무역거래의 지연과 비용 발생이 초래되는 분쟁 및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신용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신용장의 사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sup>51)</sup>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신용장의 서류심사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SBPED를 모델로 하여 ISBP가 제정된 것이다.

47) R. Längerich, op. cit., p.15.

48) M. Shaw, supra note 9, p.13.

49) O. Malmqvist, “How ICC is approaching standard banking practice”, DCINSIGHT, Vol.7, No.4, 2001. 10/12, p.10.

50) R. J. Mann, “Ronold J. Mann wonders why, in view of high discrepancy rates, business continues to use letters of credit”,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7, No.1, Winter 2001, p.3.

51) 강원진, 전제논문, p.145.

## (3) 서류심사기준의 구체화 필요성

신용장통일규칙은 변화하는 상거래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수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은행 관행을 상당한 정도까지 통일시켜 왔지만 신용장거래에서의 중추적 부분인 은행의 서류검토와 관련해서는 그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sup>52)</sup>

상술하면 과거에는 은행이 신용장을 운용하는 경우 제시된 서류의 심사기준으로서 엄격일치의 원칙을 준수하여 왔다. 즉, 엄격일치의 원칙이란 수익자가 신용장하에서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은행에게 신용장의 제조조건과 엄격하게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의 제조조건과 엄격하게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엄격일치의 원칙은 현실적용상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즉, 은행에 의하여 수행되는 서류심사의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엄격일치는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화환신용장하에서 제시된 대다수의 서류들은 적어도 최초에 제시되었을 때 화환신용장하에서 동 서류의 거절을 정당화할 수 있는 불일치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만일 그러한 각 서류가 제시 즉시 불일치의 이유 때문에 거절된다면 화환신용장에 의한 자금조달체제는 붕괴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은행이 서류를 심사할 때에는 엄격일치의 원칙보다는 실질적인 불일치가 아닌 사소한 불일치는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상당일치의 원칙이 점차 힘을 얻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서류심사의 기준으로 위와 엄격일치의 원칙과 상당일치의 원칙 중에서 어떠한 원칙을 기준으로 채택하여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sup>53)</sup>

그런데 1993년 개정된 신용장통일규칙 제5차 개정에서는 서류심사의 기준으로 국제표준은행관행이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동 개념은 서류심사의 기준을 이룬 바 엄격일치의 원칙으로부터 UCP의 제규정을 근거로 한 국제표준은행관행에 의한 조건충족의 원칙으로 현실적인 변경을 하고자 함이었다.<sup>54)</sup>

52) 김영훈, “국제표준은행관행에 관한 일고”, 『중재』 제309호, 2003 가을, p.72.

53) 박석재, “UCP 500 하에서 은행의 신 서류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3권 제1호, 1998. 5, p.188.

54) 小原三佑嘉, “新春問答・信用狀統一規則論”, 『國際金融』, 제918호, 1994, p.35.

Kozolchyk 교수가 UCP 500이 기초되기 이전에 세 대륙에 있는 은행가들과 함께 행한 인터뷰에서 “불일치” 인쇄물에 기입되어 있는 불일치의 숫자는 틀린 철자를 포함하여 “엄격일치”의 “형식주의적인” 의견 때문에 심사자가 제소당하거나 또는 상환을 거절당할 공포에 비례하여 크게 증가하여 왔음이 명백해졌다. 따라서 제13조는 법원, 은행가 및 은행업 변호사에게 그들이 심사의 표준에 적용한 호칭에도 불구하고, 은행가는 전제적인 법원의 표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지식이 있는 국제 은행가의 행동에 의하여 정의된 상당한 주의를 행사하는 것이 기대된다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만일 은행가가 개설 의뢰인 이름의 틀린 철자가 중량증명서가 아니라 상업송장에서 나타난다면 은행가는 그것을 훨씬 더 심각한 불일치로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UCP 500에 의하면 법원은 더 이상 서류의 심사에 있어서 모든 불일치는 동일하며, 최소한 또는 사소한 불일치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sup>55)</sup>

즉, 화환신용장 은행업은 경쟁적이며 협력적인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은행이 여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고객과 환거래은행간의 신뢰를 장려하는 관행을 발전시켜야 한다. 고객에게 날카롭고, 불성실하거나 태만한 관행은 필연적으로 단명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훌륭한 국제표준은행관행을 구성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화환신용장에 관한 국제표준은행관행은 정직하고도 예측 가능한 관행을 포함하여야 한다.<sup>56)</sup>

요컨대 전통적으로 신용장에 의한 서류심사는 엄격일치의 원칙과 상당일치의 원칙으로 양분된 법률원칙을 바탕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UCP 500에서는 은행의 서류심사기준을 국제표준은행관행이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UCP 500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표준은행관행이라는 서류심사기준은 모호하고 매우 추상적이다. 따라서 UCP 500에서 반영한 국제표준은행관행이라는 개념은 서류심사기준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였다 할 것이다. 이 결과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UCP에 반영된 조항만으로는 실무적용상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sup>57)</sup> 이러한 연유로 ISBP가 제정된 것이다.

55) B. Kozolchyk, op. cit., p.16.

56) Charles del Busto, op. cit., p.39.

57) 강원진, 전제논문, p.144.

### Ⅲ. ISBP의 실무 적용상의 문제점 검토

#### 1. 은행의 책임 증가

ISBP의 도래로 은행가는 ISBP가 존재하기 이전보다 더 상세한 지식으로 자신을 무장시켜야 하므로 은행의 책임이 증가되었다고 비판하는 은행가들이 많다.<sup>58)</sup> 덴마크 Nordea 은행의 Längerich 씨는 “은행가들은 관련된 법률에 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기대되는가?”라고 질문한다. 그는 도로화물운송장에 관한 CMR협약에 의하여 지배되는 서류들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관하여 송화인의 서명이 요구되어야 하는가의 여부를 질문함으로써 그러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의 어려움을 강조한다.<sup>59)</sup> 또한 “서류가 화환신용장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서류 그 자체로서 완전하게 기입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가의 여부 또는 “허위진술 또는 불충분한 서류를 수리하는 것이 훌륭한 국제표준은행관행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간다라고 하여 은행의 책임증가를 비판하고 있다.<sup>60)</sup>

캐나다 은행위원회 회원인 T.O. Lee 씨는 송장과 관련하여 제65항을 비판한다. 즉, “...경비 및 비용은 반드시 신용장과 송장에 기재된 정형거래조건에 대하여 표시된 금액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 금액을 초과하여 표시된 어떠한 경비 및 비용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은행가가 어떠한 경비가 INCOTERMS 내에 포함되어 있는가 및 어떠한 경비가 EXW 또는 CIF와 같은 조건들 밖에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단히 상세하게 INCOTERMS 2000을 알아야만 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freight is included in CIF’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다. 이미 무역현장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언제나 해결되지 않는 THC(Terminal Handling Charges)는 어떤가? excise, duty,

58) T.O. Lee, “How would bankers handle new responsibilities imposed by ISBP?”, LCMONITOR, Vol.5, Iss.2, 2003. 3/4, p.14.

59) B. Kozolchyk, op. cit., p.16.

60) R. Längerich and B. Wheble, “What’s behind the UCP Article 13(a) phrase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2, No.4, Autumn 1996, p.11.

VAT, GST, PST 및 어떠한 유형의 수입세가 DDP 내에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가? 은행가는 이러한 새로운 규정 하에서 효율적인 서류심사를 수행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sup>61)</sup>

운송서류와 관련해서는 제82항을 비판한다. 즉, “만일 Container Yard(CY) 또는 Container Freight Station(CFS)이 수령장소로서 명시되고 그 장소가 명시된 선적항과 동일하다면(예를 들면 수령장소 : Hong Kong CY; 선적항 : Hong Kong), 이러한 장소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선적항의 명기와 ‘on board’ 부기에서 선박의 이름은 불필요하다.”는 조항은 컨테이너 데포(depot), CFS, CY가 동일한 해항 내에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중요한 모든 항구를 은행가가 알 필요가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UN에 180개국 이상의 나라가 있으며 각국이 평균 6개의 주요한 해항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은행가는 1,080개 해항의 상황을 알아야만 한다. 이것은 확실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sup>62)</sup>

스위스 은행위원회 회원인 Müller 씨는 제98항을 비판하고 있다. 동항은 만일 신용장이 운임에 부가적인 비용이 포함된 선화증권의 수리 불가능함을 규정한다면, 선화증권은 운임에 부가적인 경비 및/또는 비용이 초래되었거나 또는 초래될 것임을 나타내지 않아야만 한다는 개념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인도 조건이 ‘FOB, spout trimmed’라고 규정되는 선화증권에서 규정된 모든 경비 또는 비용에 대하여 모든 서류 심사자가 알고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의문이다. 각 서류 심사자는 현재 선화증권 내에 표시된 비용이 운임경비에 부가적인 비용이 포함되는지 또는 신용장 조건이 금지하지 않는 다른 비용을 나타내는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은행 밖의 단체에 문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은행원을 불안하게 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이다.<sup>63)</sup>

보험서류와 관련해서는 제186항(“보험서류는 신용장에서 정의된 위험을 담보하여야만 한다...” )과 제192항(“만일 신용장이 보험담보가 비율에 상관없이 행해져야 함을 필요로 한다면 그 보험서류는 그 보험담보가 franchise 또는 excess deductible에 따른다고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야만 한다.”)을

61) T.O. Lee, op. cit., p.12.

62) T.O. Lee, op. cit., p.12.

63) R. Müller, “Three bankers judge the document on standard banking practices”, DCINSIGHT, Vol.9, No.1, 2003. 1/3, p.14.

비판한다. 은행가는 무역업자들간 분쟁의 주요한 원인인 exclusions, franchise, excess deductible의 개념뿐만 아니라 Institute Cargo Clauses(A), (B), (C)에서 보험의 조건에 대하여 훨씬 더 많이 알아야만 할 것이다. 은행가들은 ISBP의 도입 후 이러한 흠탕물 속에 자신들이 끌려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sup>64)</sup>

요컨대 ISBP의 제정으로 동 간행물의 제정 이전 서류심사 시 은행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던 부분들이 명확히 규정되어 은행원의 자율성이 줄어들었다. 또한 신용장 고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서류심사 기준으로서 엄격일치 대신 국제표준은행관행이라는 구체적인 대조표가 제시됨으로써 은행원들이 과거보다 책임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지만 ISBP로 인해 신용장과 관련된 분쟁 건수가 감소하고, 신용장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면 신용장 관계 당사자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다. 은행들도 책임증가에 비례하여 수익이 증대할 것임은 쉽게 짐작이 가능하다.

## 2. 은행 실무와의 부조화

### (1) 만기일 문제

ISBP 제45항 e에서는 선화증권의 일부후 60일을 만기로 하는 환어음에 관하여 신용장이 허용하는 지리적 지역내(예 : 유럽)에 소재하는 복수의 항에서 선적된 경우이며, 선적일을 달리 하는 1조의 선화증권이 제시된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이른 적재일을 만기일의 기산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sup>65)</sup> UCP 500은 이와 같은 취지의 명문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ISBP가 이러한 취지의 해석을 새로이 창설한 것이라고 여겨지며, 그 범위 내에서 ISBP가 장래 UCP의 개정을 선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66)</sup>

또한 ISBP 제48조 (b)항은 불일치하는 서류들의 경우 지급인 은행이 서류를 거절 통고하고 후에 다시 승인 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만기일은 지급인 은행에

64) T.O. Lee, op. cit., p.15.

65) 예를 들면 8월 16일에 더블린 항에서 선박 A에, 또한 8월 18일에 로테르담 항에서 선박 B에 각각 적재된 것을 기재한 한 종류의 선화증권의 제시가 행해진 때에는 8월 16일을 만기일 계산의 기산일로 본다.

66) 飯田勝人, “「荷爲替信用狀に基づく書類點檢に關する國際標準銀行實務」(ISBP)の制定と實施”, 『金融法務事情』, No.1679, 2003. 7. 5, p.5.

의한 환어음의 인수일 후 xxx일보다 늦지 않게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기일의 계산 문제에 있어서 은행이 거절 통지서를 보낸 후, 은행은 또한 승인을 위하여 개설의뢰인에게 불일치 사항을 조회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북미 은행들의 관행은 개설의뢰인이 그 불일치사항을 받아들인 후, 만기일은 개설의뢰인이 그 불일치사항을 받아들인 일자로부터 계산된다.

그러나 아시아에서와 일부 미국 은행들에서의 관행은 다르다. 아시아 은행들이 만기일을 계산하는 방식은 비록 그들이 나중에 개설의뢰인에게 거절 통지서를 보낼지라도 그들이 서류를 수령한 일자로부터 시작된다. 아시아와 북미에서의 관행이 이처럼 다르므로 아시아 내의 은행들은 동 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개설은행과의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신용장을 사용하는 경우 수익자는 예를 들면 ‘일람후 180일’(180 days after sight)이라고 기술하는 것 대신에 ‘선적일 후 180일’(180 days after the shipment date)로 기술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서류를 제시할 때 만기일이 미리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67)</sup> 이와 같이 만기일과 관련해서는 ISBP의 조항이 실제 국내의 은행관행과 모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 (2) 신용장 언어의 문제

ISBP의 제정작업 중 논란이 많았던 주제는 서류의 언어문제이었다. ISBP 제정 작업부가 받은 제안들은 너무나 모순되는 것이어서 완벽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즉, 일부에서는 신용장 및 서류는 영어로 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또 다른 일부에서는 어떠한 언어가 사용되었더라도 수리 가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68)</sup> 이러한 주장의 대치를 해결하기 위한 타협으로 나온 것이 ISBP 제26항이다.

동항에서는 “수익자가 발행한 서류는 신용장의 언어로 작성되는 것이 기대된다.”라는 표현이 있다. 그러나 UCP 500에는 수익자가 신용장의 언어로 서류를 발행할 것을 필요로 한다는 어떠한 규칙도 없다. 또한 수익자에 의하여 제시되었지만 수익자에 의하여 발행되지 않은 서류들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따라서 이 항목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관행은 만일 신용장에

67) S.C. Seng, *supra* note 13, p.11.

68) R. Längerich, *op. cit.*, p.15.

서 사용 언어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그 서류들은 어떠한 언어로도 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sup>69)</sup>

그러나 만일 신용장에서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은행들은 신용장의 언어와 다른 언어로 발행된 서류가 반드시 불일치로 간주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들은 UCP 500이 그 문제를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 의하여 인정될 수도 있다.<sup>70)</sup>

### (3) 용어 문제

ISBP 45항에서 'from'이란 단어가 기한부 환어음의 만기일에 사용되면 'after'의 의미와 같이 당해 일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ICC 은행위원회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UCP 500에는 선적기일에 관한 규정이긴 하지만 'from'이란 단어는 당해 일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제47조 a 항), 또한 ICC 은행위원회의 기존 입장도 환어음의 매입기간과 관련하여 'after'는 당해 일자를 제외하는 반면에 'from'은 당해 일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ICC Publication 371, R.294).<sup>71)</sup>

상술하면 UCP는 선적기간의 계산을 제외하고는 'from'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비록 R.294는 Issue 1에서 “그러나 'from'은 관련된 기간의 첫째 날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널리 받아들여지지만, 'after'는 수령 또는 행위의 다음 날짜부터 시작한다.”라고 진술하고 있을지라도, ISBP 자료에서 'from'이란 용어는 언급된 기간의 첫째 날을 제외한다는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제 우리는 'from'이란 연지급 또는 인수 만기일의 계산에 있어서 언급된 기간의 첫째 날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음을 수용하여야만 한다. 비록 매입기간과 관련하여 발행되었을지라도 R.294는 주어진 진술에 관해서 그 가치의 일부를 상실하고 있다.<sup>72)</sup>

69) R. Müller, op. cit., p.14.

70) S.C. Seng, “Standard Banking Practice”, LCMONITOR, Vol.4, Iss.12, 2002. 12, p.2.

71) 서정두, 전계논문, p.335.

72) R. Müller, op. cit., p.14.



## IV. 결론

필자는 본 논문에서 ISBP의 의의, 유용성, 문제점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여기서는 본론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요약하고 실무상 유의하여야 할 점을 지적하면서 글을 맺기로 한다.

국제표준은행관행이라는 개념은 서류심사의 기준으로서 UCP 500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지만 이 용어의 애매 모호함으로 인하여 신용장 관계당사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국제표준은행관행의 문서화를 추진하여 제정된 것이 ISBP이다.

ISBP는 상이한 신용장 관행의 국제적인 통일을 통해 신용장 분쟁을 최소화하고 서류심사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종래 사소한 불일치로 인한 UNPAID를 대폭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ISBP는 은행의 책임증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종래 은행에게 부과되지 않았던 서류 이외의 무역관련 내용을 알아야 하는 새로운 책임이 은행에게 부과됨으로써 은행의 책임이 증가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은행의 책임 증가와 동시에 은행측 수익성의 향상이 기대되므로 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또한 ISBP는 그 내용에 있어서 만기일의 문제, 신용장 언어의 문제, 용어 문제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는 UCP 500이 제정된 후 10년이 지난 관계로 UCP 500과 다른 관행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ISBP에 반영한 나머지 UCP 500과의 모순이 발생한 것이라 추정된다. 또한 ISBP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에서 사용되던 SBPED를 기준으로 제정된 연유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은행 관행과 상이한 조항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지만 신용장에 종사하는 세계의 은행 및 사용자가 ISBP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신용장 관계당사자는 무엇보다도 우선 ISBP에 숙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뒤 ISBP의 특정항목이 우리 나라의 신용장 실무관행과 다르다면 적절한 조항을 신용장 및 신용장 개설의뢰서에 추가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ISBP 특정조항의 취지를 명확히 배제하여 두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또한 신용장통일규칙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화환

신용장의 모든 조건은 역시 국제표준은행관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간행물에 규정된 관행을 검토함에 있어 당사자들은 반드시 신용장통일규칙 조항의 규정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거나 변경하는 화환신용장의 모든 조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sup>73)</sup>

---

73) ISBP 서문.

## 참고문헌

- 강원진, “신용장서류심사를 위한 ICC 국제표준은행관행의 일반원칙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18권 제3호, 2003. 9.
- 김영훈, “국제표준은행관행에 관한 일고”, 『중재』 제309호, 2003 가을.
- 박석재, “UCP 500 하에서 은행의 신 서류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3권 제1호, 1998. 5.
- 박세운, “신용장 관련 국제표준은행관행 해설”, 『중재』 제308호, 2003 여름.
- 서정두, “ISBP(신용장 국제표준은행관습)의 주요내용과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20권, 2003. 8.
- 經濟法令研究會 編, 『信用狀統一規則の解説とQ&A』, 經濟法令研究會, 1993. 12.
- 飯田勝人, “「荷爲替信用狀に基づく書類點檢に關する國際標準銀行實務」(ISBP)の制定と實施”, 『金融法務事情』, No.1679, 2003. 7. 5.
- 小原三佑嘉, “新春問答・信用狀統一規則論”, 『國際金融』, 제918호, 1994.
- Charles del Busto, Documentary Credits UCP 500 & 400 Compared, ICC, 1993.
- Kozolchyk, B.,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The UCP is creating it, says Boris Kozolchyk”,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3, No.3, Summer 1997.
- Längerich, R., “Three bankers judge the document on standard banking practices”, DCINSIGHT, Vol.9, No.1, 2003. 1/3. and Wheble, B., “What’s behind the UCP Article 13(a) phrase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2, No.4, Autumn 1996.
- Lee, T.O., “How would bankers handle new responsibilities imposed by ISBP?”, LCMONITOR, Vol.5, Iss.2, 2003. 3/4.
- Malmqvist, O., “How ICC is approaching standard banking practice”, DCINSIGHT, Vol.7, No.4, 2001. 10/12.
- Mann, R.J., “Ronold J. Mann wonders why, in view of high discrepancy rates, business continues to use letters of credit”,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7, No.1, Winter 2001
- Müller, R., “Three bankers judge the document on standard banking

- practices”, DCINSIGHT, Vol.9, No.1, 2003. 1/3.
- Seng, S.C., “Implications and impact of ISBP”, DCINSIGHT, Vol.9, No.2, 2003. 4/6., “Standard Banking Practice”, LCMONITOR, Vol.4, Iss.12, 2002. 12.
- Shaw, M., “Three bankers judge the document on standard banking practices”, DCINSIGHT, Vol.9, No.1, 2003. 1/3., “Martin Shaw claims there are better ways to reduce discrepancies and that ICC should take advantage of them”,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5, No.2, Spring 1999.
- Smith, D.R., “Standard banking practice approved”, DCINSIGHT, Vol.8, No.4, 2002. 10/12., “Donald Smith explains the ICC project on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s”,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6, No.3, Summer 2000.
- Turner, P., “‘Standard banking practice’ and the UCP”, DCINSIGHT, Vol.8, No.4, 2002. 10/12.
- UCP 500.
- ISBP.

ABSTRACT

**A Study on the Significance and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Business Practice of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Park, Suk Jae

UCP 500 has introduced new words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as the basis of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However, the words have caused confusion among parties concerned with letter of credits.

So, at its May 2000 meeting, ICC Banking Commission established a task force to document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presented under documentary credits(ISBP). The publication is the product of two and a half years of work by a task force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It was approved by the full Commission at its meeting in Rome in October 2002.

The ISBP is a practical complement to UCP 500. It explains how the rules are to be applied on a day-to-day basis. As such, it fills a needed gap between the general principles announced in the rules and the daily work of the documentary credit practitioner.

But, ISBP have two problems. First, ISBP impose more responsibilities than before the ISBP existed on banks. Second, ISBP have some problematic articles like the problem of maturity, letter of credit language, term.

Consequently, all parties concerned with documentary credits need to armour themselves with knowledge for ISBP. Also, it should be noted that any term in a documentary credit which modifies or affects the applicability of a provision of the UCP may also have an impact on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Therefore, in considering the practices described in this publication, parties must take into account any term in a documentary credit that expressly excludes or modifies a provision in an article of the UCP.

Key Words : ISBP,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Letter of Credit, UCP 500